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2. . . (제 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문화재청에 역사문화권정비 및 문화유산 국제협력 정책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5명(5급 2명, 6급 3명)을 증원하고, 문화재청 소속기관인 국립고궁박물관에 조선왕조실록·의궤 등 보존관리와 디지털 스마트박물관 및 온라인 통합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3명(5급 1명, 7급 1명, 연구사 1명)을 증원하고, 국립무형유산원에 무형문화재 이수심사 강화 및 전승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2명(연구사 2명)을 증원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 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본부 인력 2명(5급 1명, 8급 1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소속기관 인력 3명(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을 감축하려는 것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기획재정부 및 문화재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11. 23. ~ 11.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총계 “284”를 “287”로 하고, 일반직 계 “283”을 “28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272”를 “275”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235”를 “237”로 하고, 일반직 계 “188”을 “19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81”을 “183”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으로 감축되는 문화재청 본부 정원 2명(5급 1명, 8급 1명)과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등 소속기관 정원 3명(7급 1명, 9급 1명, 연구사 1명)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된 현원이 이 영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에 상응하는 정원이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각각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신·구정원대비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1]

문화재청 공무원 정원표(제3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84</u>	• <u>287</u>	+3
일반직 계	• • <u>283</u>	• • <u>286</u>	+3
3급 또는 4급 이하	• • <u>272</u>	• • <u>275</u>	+3
	•	•	

신·구정원대비표

■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별표 2]

문화재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35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 <u>235</u>	• <u>237</u>	+2
•	•	•	
•	•	•	
일반직 계	<u>188</u>	<u>190</u>	+2
•	•	•	
3급 또는 4급 이하	<u>181</u>	<u>183</u>	+2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64